

2008. 3. 9. 남경 1차, 여경 1차, 101단 1차 형법 기출문제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www.kpa.co.kr

gj.kpa.co.kr

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개정이전)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 · 공연 · 방송 · 전시 등’에 ‘배포’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구)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 외국인이 제3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과 형식이 모두 다르므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 까지 공동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틀리다. 위와 같이 처벌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대판 1999.3.26, 97도1769).

㉡ 틀리다.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5.12, 2005도6525).

㉢ 맞다. 대판 1997.11.20, 97도2021

㉣ 틀리다.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죄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죄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5.21, 95도2002).

㉤ 맞다. 대판 1977.9.28, 77도504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 ②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④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구호조치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해설** ➡ ① 맞다. 나머지의 지문은 틀리다.
- ② ‘진정부작위범’ 혹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 ③ 유기죄에서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 ④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구호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3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천주교 사제가 범인을 고발하지 않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해설** ➡ ④ 성직자가 죄지은 자를 단순히 고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제공이나 도피자금의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한 것은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3.3.8, 82도3248).
- ① 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9.4, 2001도3167).
 -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반이다(대판 1988.2.23, 87도2358).
 - ③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3.28, 95도2674).

4 甲은 자기에게 길을 물으러 다가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그 오인에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에 대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불법은 성립되지만 고의책임이 조각되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해설 →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를 '사실의 착오'로 이해하며,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의 부존재에 관한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해석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5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이 장사를 다시 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 ② 마약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상에 어려움이 있고 판로가 마땅하지 않으며, 발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조를 단념한 경우
- ③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④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동기를 경료 하였다가 가동기를 말소한 경우

해설 → ③ 중지미수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강간을 중지한 경우, 자의성을 인정하였다(대판 1993.10.12, 93도1851).
① 기수이다(대판 1983.12.27, 83도2629).
② 불능미수이다(대판 1985.3.26, 85도206 등).
④ 기수이다(대판 1979.8.28, 79도1611).

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부실공사를 하고, 乙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고, 丙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교량이 붕괴되어 통행인이 사망한 경우 甲, 乙, 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단독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 ②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철로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甲과 乙은 丙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약속 당일 甲은 저수지로 나가지 않았지만 乙은 丙을 만나 저수지에 던져 살해한 경우 甲과 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④ 甲은 2시간 전에 乙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 있던 丙을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丙이 사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丙이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甲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해설 → ④ 맞다.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① 틀리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7.11.28, 97도1740).
② 틀리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4.5.24, 94도660).
③ 틀리다. 공동정범을 부정하였다(대판 1986.1.21, 85도2371).

7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의 환급을 받은 경우
- ㉡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
- ㉣ 원목을 절취한 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것처럼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 ㉤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고 다시 이를 판매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강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0.7.10, 90도1176).

㉡ 절도죄 외에 별도의 무허가대마소지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4.13, 98도3519).

㉢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자기앞수표를 현금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3.11.23, 93도213).

㉣ 절도죄만 성립한다. 사기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74.10.22, 74도2441).

㉤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83.11.8, 83도2031).

8 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 ② 몰수는 유죄판결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하여 할 수 있다.
-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 ④ 공동정범의 1인이 기소된 경우,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해설 ▶ ③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700).

④ 대판 2006.11.23, 2006도5586

9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현장에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도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지 못하였다면 호주머니 속에 과도를 지닌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다면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③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식칼을 뺀 다음, 흔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그 식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구타한 경우 그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설** ▶ ① 틀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7.3.30, 2007도914 외).
- ② 맞다. 대판 2002.11.26, 2002도4586
- ③ 맞다.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혼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9.12.22, 89도1570).
- ④ 맞다.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7.28, 81도1046).

10 다음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현장 감독 甲은 공사를 위하여 웅덩이를 파두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웅덩이에 떨어져 다쳤다.
- ② 의사 甲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 그 환자가 퇴원 후 사고가 난 방에서 자다가 다시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
- ③ 산부인과 개업의사인 甲은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도중 산모가 갑자기 출혈을 하였지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아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 ④ 甲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앞차와 약 30m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앞차에 의해 역과되어 누워있는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

- 해설** ▶ ③ 제왕절개분만시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모가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을 부정하였다(대판 1997.4.8, 96도3082).
- 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대판 1986.8.16, 86도915).
- ②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1.2.12, 90도2547).
- ④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대판 2001.12.11, 2001도5005).

1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동네 아줌마 및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는 말을 한 경우
- ㉡ 수사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순차로 유포한 경우
- ㉢ 식당 내의 방안에서 甲의 친척인 乙에게 甲과 丙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 ③ 甲이 乙을 살해한 후 乙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 ④ 회사원 甲이 상사와의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 관계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해설 ➡ ①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그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대판 1990.5.25, 90도573).

②③④ 나머지 지문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였다(② 대판 1991.6.11, 91도878, ③ 대판 2000.10.13, 2000도3655, ④ 대판 1995.9.5, 94도3033).

14 준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❶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❷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❸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❹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이라도 준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 ①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②③④ 나머지 지문은 옳다(② 대판 2001.8.21, 2001도3447, ③ 대판 1992.7.28, 92도917, ④ 대판 2003.10.24, 2003도4417).

15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금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를 한 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기망의 수단으로 영득한 경우
- ㉣ 허위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 ㉤ 음식점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 ㉥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해설 ㉠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10.23, 2001도2991).

- ㉠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12.8, 98도3263).
- ㉡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부정한다(대판 1980.12.9, 80도1177).
-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2.10.26, 82도1529).
- ㉣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10.15, 96도2227).
- ㉤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2, 98도3549).

16 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 없는 돈을 지급하였다.
- ㉡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업체에 지출하였다.
- ㉢ 은행지점장이 기한이 되었으나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
- ㉣ 회사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
- ㉤ 보험계약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하여 체결시킨 보험계약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① ㄱㄴㄷ ② ㄴㄷㄹ
③ ㄱㄴㄷ ④ ㄷㄹㄹ

해설 ➡ ㉠㉡ 배임죄가 성립한다.

- 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 그 기한연장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부분을 따로 떼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판 1999.7.9, 99도1864).
- ㉕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12, 98도4704).
- ㉖ 배임죄를 부정한다(대판 1986.8.19, 85도2144).

17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아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
- ㉡ 한국은행이 발행한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서 일본의 500엔짜리로 작동하는 자판기에 투입하여 사용하였지만, 일반인이 500엔으로 오신할 정도는 아니었다. (통화위조죄)
- ㉢ 타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타인은 문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문서위조죄)

-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해설 ➡ ㉠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 대판 2000.2.11, 99도1237).

- ㉠ 무죄이다(대판 2002.1.11, 2000도3950).
-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판결).
- ㉣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 ㉤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5.14, 96도554).

18 간통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②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간통을 중용 또는 유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 인정되고 완전한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다른 이성과 정교관계를 중용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간통의 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②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그 이후 피고인에게 간통을 중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9.12, 89도501).

- ①③④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① 대판 1986.6.24, 86도482, ③ 대판 1983.11.22, 83도2504, ④ 대판 2000.7.7, 2000도868).

19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 허위 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자료가 되게 한 경우
- ②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
- ③ 허위작성된 간호학원 수료증명서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
-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 해설** ▶ ④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에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 ①②③ 나머지 지문은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① 대판 1983.9.27, 83도1864, ② 대판 1986.9.9, 86도1245, ③ 대판 1982.7.27, 82도1301).

20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 ②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한 경우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5.9.5, 94도755).
- ① 대판 1998.2.24, 96도599
- ②③ 대판 1996.5.31, 96도771